



수산보조금 폐지 왜, 어떻게, 무엇을

2021.11.





<목차>

1. 유해수산보조금은 남획을 조장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

- 1.1. 대규모 기업형 어업은 파괴적인 남획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 1.2. 유해수산보조금은 대규모 기업형 어업의 남획을 조장한다.

2. 어떤 수산보조금이 유해한가?

- 2.1. 수산보조금의 분류: 좋은 보조금, 나쁜 보조금, 애매한 보조금
- 2.2. 국내 유해수산보조금 매년 9천억 원 이상
- 2.3. 나쁜 보조금 대신 좋은 보조금을

3. WTO 협상 타결로 유해수산보조금 없애야

- 3.1.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진행 중이다.
- 3.2. WTO 협상을 통해 폐지될 수 있는 보조금
- 3.3. 예외조항에 대한 우려
- 3.4. 협상을 통해 없어질 보조금과 한국 정부의 입장
- 3.5. 아무 말 없는 한국 정부

4.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는 수산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1. 유해수산보조금은 남획을 조장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

1.1. 대규모 기업형 어업은 파괴적인 남획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은 강력한 엔진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 어획과 서식처 파괴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왔다. 자본과 기술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대 어업은 더 멀고, 더 깊은 곳에서, 더 다양한 생물을 끄집어내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에 전 세계 수산자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¹

전 세계적으로 어획능력량은 증가하지만 어획량은 늘지 않고 있고 ², 큰 어종은 적게 잡혀서 그들의 먹이가 되던 작은 어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³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2017년 기준 전 세계 수산자원의 34.2%가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수준이지만 그 한계까지 어획 되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의 93.8%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 6.2%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그림1). 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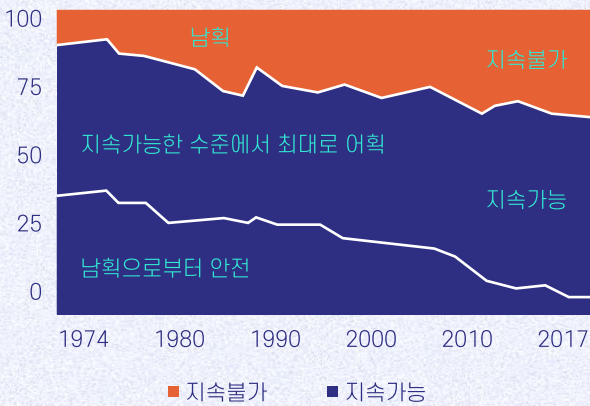


그림 1. 전세계 해양수산자원 상태 추세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1.2. 유해수산보조금은 대규모 기업형 어업의 남획을 조장한다.

전 세계 정부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산 업계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중 수산자원을 고갈 시켜 오히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많다.

유해수산보조금은 특히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 집중적으로 지급되어 선박과 중장비 등을 동원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수산업계는 보조금을 받아 어획 능력을 높여서 일시적으로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어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양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갈수록 어획이 어려워지고 수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다시 보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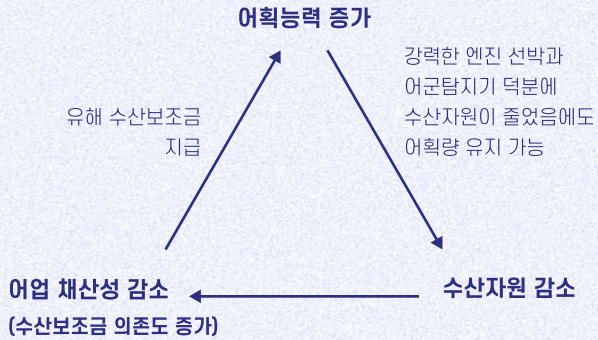


그림 2.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

2018년, 전 세계 수산보조금 규모는 354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유해수산보조금은 222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국 정부는 같은 기간 15억 달러 규모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⁵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부문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또한, 유해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은 기업형 어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9년 전 세계 유해 수산보조금의 90%가 기업형 어업 분야에 집중됨 ⁶). 막대한 보조금을 소수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독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조금 없는 어업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시작부터 끝까지 의존적이다. 어선과 장비는 정부의 도움으로 저리로 융자받은 자금으로 조달하며, 어선과 어선원의 보험료도 정부가 지원하고, 유류세는 면제받는다. 게다가, 어선 감척 사업 예산으로 폐업지원금까지 지급된다. 심지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원양 어업의 경우 보조금 없이는 수익을 내지 못하리라 추정된 바 있다. ⁷

2. 어떤 수산보조금이 유해한가?

2.1. 수산보조금의 분류: 좋은 보조금, 나쁜 보조금, 애매한 보조금

Rashid Sumaila 외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준으로, 1) 좋은(beneficial) 보조금, 2) 어획능력강화 혹은 나쁜(capacity-enhancing or bad) 보조금, 3) 애매한(ambiguous) 보조금, 세 가지로 분류했다.⁸

좋은 수산보조금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획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 증진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어획모니터링 사업이나 △수산자원평가, 그리고 △서식처 복원 또는 수산자원복원과 같은 어업관리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어획과 가공 과정 등을 개선해 수산자원 증진을 도모하는 △수산업 R&D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어획을 금지하는 보호구역 지정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돕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사업도 좋은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쁜 보조금은 바로 유해수산보조금을 뜻한다. 이 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 보조금이라고도 불리며, 어획 능력을 강화하여 남획을 조장한다. 이 보조금은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유류 보조금, △선박의 건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 △어항 신축 및 개축, △가격지원 및 마케팅 지원, △가공 및 저장 인프라 구축, △어업 진흥사업 및 지원사업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수산보조금은 그 효과가 수산자원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애매한 보조금이라고 불린다. △어업인 지원 사업, △어선 감척 사업, △어촌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애매한 보조금들은 어획 노력을 감소 시켜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울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잘 설계되지 못하면 어획능력강화 보조금이 될 수 있다.

2.2. 국내 유해수산보조금 매년 9천억 원 이상

국내 주요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 어항 건설, 어업경영자금 융자 이차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등이 있다. 이들만 하더라도,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유해 수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간 총 유류세 감면액은 7천억 원 수준으로 보조금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크다.⁹ 면세유 공급은 대표적 유해수산보조금으로 가장 우선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 자체 분석 결과,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해수부 수산·어촌 부문 사업 중 액수가 가장 큰 상위 3개 세부사업은 1)'국가어항'¹⁰, 2)'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¹¹, 3)'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이었다. 각각 연평균 (2018~2021년도) 약 2,400억, 1,150억, 950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국회 확정액 기준).

'국가어항' 사업은 어업인 안전 도모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서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되어 감축되어야 한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정부가 어업 경영체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 경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획 능력을 강화하는 보조금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명백히 어업경비를 경감시키는 유해수산보조금이다. 더불어, 이차 지원뿐 아니라, 정부가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또한 어획 능력을 높이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어항' 사업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해수산보조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매년 최소 약 9천억 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보수적인 접근 외에, 수산·어촌 부문 예산사업 전체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39%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2018~2021년 기준)¹². 유류세 감면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세 감면액까지 더하면,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어획능력을 강화해 남획을 조장하는데 쓰이고 있고, 이는 수산·어촌 부문 전체 예산 약 2조 8천억 원(2018~2021년 기준)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2.3. 나쁜 보조금 대신 좋은 보조금을

수산자원의 회복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게다가, 폐지와 동시에 대안으로서 좋은 보조금을 도입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또한, 어획 노력당 어획량 증가로 이어져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할 것이다. 어구 관리개선,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폐지된 보조금을 어업인 복지 수당 등으로 전환해서 폐지로 인해 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WTO 협상 타결로 유해수산보조금 없애야

3.1.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은 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0년째다.¹³ 2015년 UN은 지속가능개발 의제(UN SDGs 14.6)의 하나로 유해수산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할 것을 결의해 협상 시한을 분명히 했다.¹⁴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UN SDG가 정한 바대로 2019 개최될 각료회의 때까지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¹⁵ 그러나, 시한을 넘겨 여전히 협상 중이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¹⁶

3.2. WTO 협상을 통해 폐지될 수 있는 보조금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은 여전히 타결될지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정문 초안을 보면 금지 조항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금지한다.

- 1)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 2)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지원되는 보조금
- 3) 남획과 어획 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보조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3)을 어떻게 금지하느냐'이다. 국제적으로 IUU 어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1)의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낮다. 또한,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인지 2) 또한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다.

1)과 2)는 어떤 보조금이 IUU 어업과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지원되는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한다. 반면, 3)의 경우, 금지할 특정 형태의 보조금(예를 들어 유류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목록을 만들어, 목록에 포함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업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외조항이 있다. 바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이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영세 어업의 경우, 상업적 목적보다는 생존을 위해 어획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생태계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비록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위를 요약하여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게 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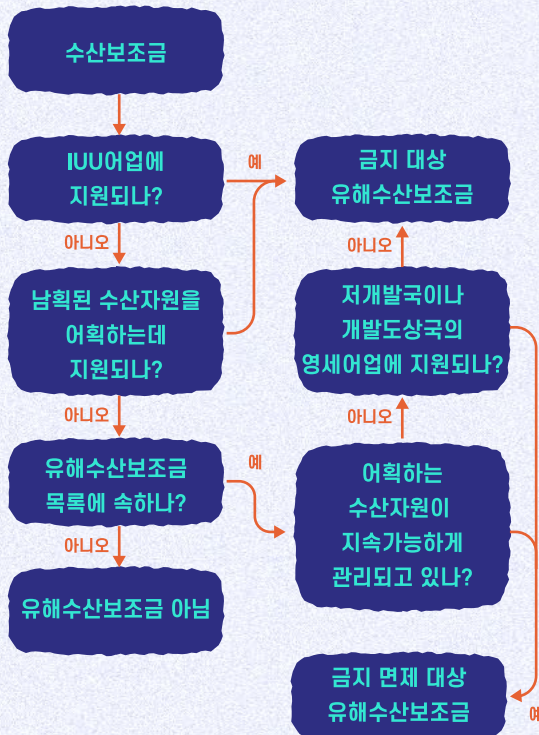


그림 3. 수산보조금 유해성 혹은 금지 여부 기준(WTO 협정문 초안 기준)

2021년 6월 30일 자 통합 협정문 초안¹⁷을 기준으로 남획과 어획 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목록, 즉 3)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 선박의 건조, 취득, 현대화, 개조, 개선 보조금
- B. 선박의 기계 및 장비(어구, 엔진, 어류 가공 설비, 어군탐지기, 냉장 시설, 분류 및 세척 설비 포함) 구매 보조금
- C. 연료, 얼음, 미끼 구매 보조금
- D.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보조금
- E. 선박과 선사, 혹은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소득 지원 보조금
- F. 어획물 가격 지원
- G. 해상 지원(at-sea support) 보조금
- H. 선박, 어획 행위, 어획 관련 행위 운영 손실 보전 보조금

3.3. 예외조항에 대한 우려

어획하는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등이 예외조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조금 폐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각국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서, 어떤 보조금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히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금지 목록에 명시해 모든 국가가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전형적이고 지급 규모가 큰 유해수산보조금만이라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유류 보조금은 조건 없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협상을 통해 없어질 보조금과 한국 정부의 입장

시민환경연구소는 현 WTO 협정문 초안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¹⁸ 조사 결과, 한국 정부는 위의 유해수산보조금 목록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2018~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유류세 감면액 포함)

위 추정액은 단지, 남획과 어획 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보조금만을 합산한 것이고, 예외 조항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IUU 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위 추정치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협상이 타결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한국 수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한국 정부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해 수산보조금 협정의 효과를 약화하는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협상안을 유럽, 일본, 대만과 함께 WTO에 제출한 바 있다. 즉,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보조금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다.¹⁹

3.5. 아무 말 없는 한국 정부

WTO 협상은 결과에 따라 한국 수산업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말이 없다. 시민들과 수산업계에 협상 타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입장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 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 이 한마디였다.²⁰

4.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는 수산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UCSB)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이 폐지된 후의 수산자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유해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2040년 이전에 전 세계 바다의 생물량이 최대 12.5%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에서는 최대 20%가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게다가, 태평양의 경우 어획량이 최대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위와 같이 분명한 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회복 효과가 나타나려면 나쁜 보조금의 전면적 금지가 중요하다. WTO 통합협정문 초안이 정하는 바와 같이 협정이 발효된다면, 생물량 증가율은 3%를 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이 유럽, 일본, 대만과 WTO에 공동 제출한 협상안대로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이 발효된다면, 태평양에서 생물량 증가 효과가 1%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의 회복 효과가 예측된다(그림 4).

한국의 해역은 중국과 일본의 해역과 맞닿아 있다. 많은 어류가 여러 해역에 걸쳐 서식하기 때문에 한, 중, 일은 일부 수산자원을 공유한다. 따라서, 세 국가가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중요하다. 협상을 통해 보조금이 세 국가에서 동시에 폐지되어야 수산자원 회복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협상 타결은 주변국들보다 한국 수산업계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유해수산보조금 규모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 또한 한국보다 그 규모가 크다(2018년, 한, 중, 일 유해수산보조금 추정액은 각각 15, 59, 21억 달러)²¹. 따라서 한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협상 타결 이후 보조금 정책 개선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비해 수산자원 회복 효과는 분명히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협상은 한국의 수산자원 회복에 큰 기회이며, 이에 소극적인 것은 소탐대실하는 격이다. 국내 보조금 체계를 지키는 것이 국익이 아니라, 주변국과 함께 보조금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국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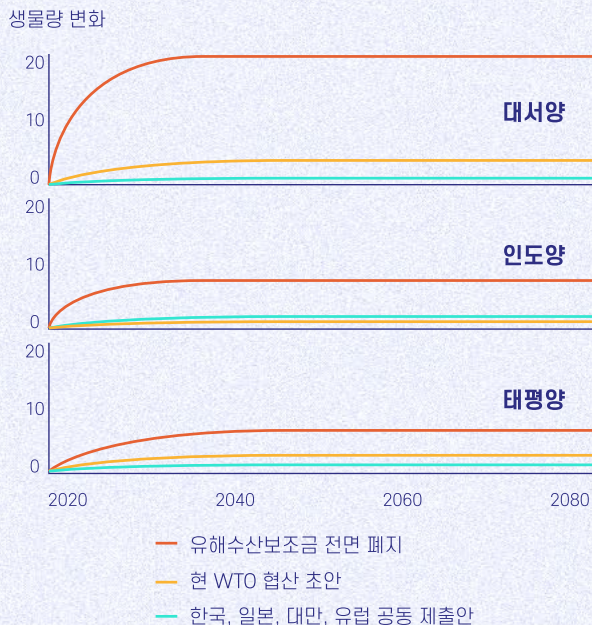


그림 4. 해역별 수산보조금 폐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http://www.subsidyexplorer.org>)

참고자료

- ¹ Pauly, Daniel. Vanishing fish: shifting baselines and the future of global fisheries, Chapter 2. Duplicity and Ignorance in Fisheries, A Threefold Expansion. Greystone Books Ltd, 2019.
- ² Worm, B., & Branch, T. A. (2012). The future of fish.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7(11), 594-599.
- ³ Pauly, D., Christensen, V., Dalsgaard, J., Froese, R., & Torres, F. (1998). Fishing down marine food webs. Science, 279(5352), 860-863.
- ⁴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 ⁵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 ⁶ Schuhbauer, A., Chuenpagdee, R., Cheung, W. W., Greer, K., & Sumaila, U. R. (2017). How subsidies affect the economic viability of small-scale fisheries. Marine Policy, 82, 114-121.
- ⁷ Sala, E., Mayorga, J., Costello, C., Kroodsma, D., Palomares, M. L., Pauly, D., ... & Zeller, D. (2018). The economics of fishing the high seas. Science advances, 4(6), eaat2504.
- ⁸ U.R. Sumaila, A.S. Khan, A.J. Dyck, R.A. Watson, G.R. Munro, P.H. Tyedmers, D. Pauly,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 Bioecon. 12 (2010) 201-225.
- ⁹ 수산해양환경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면세유류 공급량 및 공급액 (링크: <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ldx=224>, 2021.03.10 접속)
- ¹⁰ '국가어항' 사업과 '국가어항(제주) 사업의 합계
- ¹¹ 2018년의 경우, 사업명이 '어선원및어선보험'이었다.
- ¹² 시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첨부자료 참조[시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자료-연구보고서] (링크: <http://ecoinstitute.re.kr/2020/11/04/%eb%b3%b4%ea%b3%a0%ec%84%9c-%ec%9c%a0%ed%95%b4%ec%88%98%ec%82%b0%eb%b3%b4%ec%a1%b0%ea%b8%88-%ed%8f%90%ec%a7%80-%ec%99%9c-%ec%96%b4%eb%96%bb%ea%b2%8c-%eb%ac%b4%ec%97%87%ec%9d%84/>)
- ¹³ paragraph 28th, DOHA WTO MINISTERIAL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1_e/mindecl_e.htm#rules, 2021.03.29 접속)
- ¹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 ¹⁵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Decision of 13 December 2017, Fisheries Subsidies, WT/MIN(17)/64, WT/L/1031
- ¹⁶ 14와 같음.
- ¹⁷ REVISED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 (TN/RL/W/276/Rev.1), NEGOTIATING GROUP ON RULES FISHERIES SUBSIDIES, World Trade Organization
- ¹⁸ 12와 같음.
- ¹⁹ Peter Lunenborg, Analysis of the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Pillar of the WTO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122th Research paper, South Centre, November 2020
- ²⁰ 2021.07.15 배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링크:<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96>, 2021.11.03 접속)
- ²¹ 5와 같음.